

# Samil Flash

지주회사 관련 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(이하 ‘법’)” 개정

## Contents

1. 지주회사 관련 법 개정 내용
2. 지주회사 관련 법에 대한 이해
3. 지주회사 현황 및 향후 전망
4. 삼일회계법인

## Contacts

### 개정취지

지주회사제도의 합리적 보완 및 지주회사 관련규제의 완화를 통한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 촉진

### 시행일

공포한 날로부터 시행

## 지주회사 관련 법 개정 내용

###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요건 완화

100% → 200%

- 지주회사의 경우 종전에는 자본총액을 초과하여 부채를 보유할 수 없었으나, 앞으로는 자본총액의 2배까지 부채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함.

###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요건 완화

비상장법인 50%(상장법인 등 30%) → 비상장법인 40% (상장법인 등 20%)

-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보유기준 및 자회사의 손자회사 주식보유기준을 각각 100분의 50(상장법인 등은 100분의 30)이상에서 100분의 40(상장법인 등은 100분의 20) 이상으로 완화함.

### 행위제한요건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

2년 →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얻어 2년 추가 연장가능

-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, 주식처분금지계약,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부채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의 취득·처분 등이 곤란한 경우 행위제한요건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을 종전 2년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얻어 2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함.

###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요건 20% 대상 추가

국내상장법인, 공동출자법인 등 → 국외 상장법인 추가

- 국외 상장요건이 국내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요건에 상당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도 주식보유기준 100분의 20의 대상에 추가함.

## 지주회사 관련 법에 대한 이해

### 지주회사 제도 연혁

1998년 이전까지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는 역기능을 우려하여 지주회사 설립을 금지하였으나, 경제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 및 기업경영투명성 증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, OECD와 IBRD도 이를 요구함에 따라 **1999년 이후 지주회사 설립 전환을 허용**하게 됨.

다만, 지주회사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도록 지주회사의 행위제한요건을 마련하게 됨. 이후 2001년 및 2004년 일부 지주회사관련 규정이 보완되었음.

한편, 정부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순환출자구조 개선의 대안으로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권장하고, 2007년 지주회사 전환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(이하 "법") 개정을 진행함.

### 지주회사의 정의 (법 제 2조)

자산이 1,000억 이상이며,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회사

### 지주회사 등의 주요 행위제한요건 (법 제8조의 2)

#### 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

지주회사는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 보유(부채비율 200%) 금지

#### ■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요건

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주식, 자회사는 손자회사 주식을 당해 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 (상장, 공동출자법인, 국외시장,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100분의 20)미만 소유 금지

#### ■ 지주회사의 자회사 외의 다른 회사 주식소유 제한

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

지주회사의 국내 비 계열회사의 주식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금지(단, 소유하고 있는 비계열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주식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15미만인 경우 제외)

#### ■ 금융업 및 비금융업 동시 소유 금지

일반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 소유 금지

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의 국내회사의 주식 소유금지

#### ■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

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사업관련손자회사 외 다른 국내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

사업관련손자회사는 다른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금지

(\*) 지주회사 전환 설립 등의 경우 상기 행위제한요건 충족은 2년간 유예되며,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2년간 연장 가능

## 지주회사 현황 및 향후 전망



###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현황

매년 8월말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주회사 현황을 발표함. 2006년 8월말 현재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는 (주)LG, (주)GS홀딩스, (주)동원엔터프라이즈, (주)대교홀딩스, (주)세아홀딩스, (주)대웅, (주)풀무원, (주)농심홀딩스, 동화홀딩스(주), 대상홀딩스(주), 평화홀딩스(주), (주)디피아이홀딩스 등 27개 일반지주회사와 우리금융지주, 신한금융지주, 하나지주, 한국투자금융 등 4개 금융지주회사로 총 31개사임.

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는 22개('04년)→25개('05년)→31개('06년)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.

### 향후 전망

향후 행위제한요건 완화로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추정됨.

한편, 정부 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추가적인 지주회사 관련 규정 주요 개정 안은 다음과 같음.

- **손자회사의 사업관련성 폐지**

자회사는 사업관련성과 무관하게 손자회사 보유 가능

- **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보유 일부 허용**

손자회사는 국내계열회사의 100% 지분보유 및 공동출자 법인의 30% 이상 지분 보유 허용

- **행위제한요건 유예사유 추가**

합병 분할 등으로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을 요건을 미달하게 되는 경우 1년 유예 허용

## 삼일회계법인 Contacts



### 지배구조선진화 자문업무 소개

지배구조 선진화 자문 업무는 지주회사로의 전환 등을 통하여 회사 및 그룹의 지배구조를 선진화하는 업무이며,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배구조 정립을 위한 합병/분할/현물출자 등의 최적의 방법론과 세부 실행방안을 제공합니다.

1. **지주회사의 최적 이행전략 수립**  
최적의 효과와 최소의 비용이 가능한 이행방안 제시
2. **이행단계 별 세부 Action Plan 수립**  
재무구조 및 자금수지 분석, 이행 절차 관련 규정 및 요건, Tax검토
3. **실행 지원**  
이행 방안 세부 실행 지원

### 삼일회계법인의 역량 및 Contacts

지배구조선진화 업무에 요구되는 자문사의 Qualification 요소를 감안할 때, 삼일회계법인이 한국에서 지배구조선진화 관련한 업무경험이 가장 많으며 Total Consulting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자문기관입니다.

- 한국 내 최대의 풍부한 경험 및 전문지식 보유
- Total Consulting Service 제공
- 우수한 분석방법론 및 다양한 문제점/해결방안 DB 보유
- 전략, 법률, Tax 및 Action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최고의 경험 및 실력 보유

#### 서동규 상무 (Partner)

Telephone : 02-709-0254  
Mobile : 011-9024-0254  
e-mail : [tkseo@samil.com](mailto:tkseo@samil.com)

#### 최형도 이사

Telephone : 02-709-0253  
Mobile : 011-9724-0128  
e-mail : [hdchoi@samil.com](mailto:hdchoi@samil.com)

[www.samil.com](http://www.samil.com)